



보 건 복 지 부



수신 대한의사협회장

(경유)

제목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등 관련 일부개정고시안 의견 검토결과 회신

1. 관련근거

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

나. 대한의사협회 제821-03737호(2026.6.24.)

2.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등 관련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(' 26.6.19. ~ 6.24.) 귀 기관의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붙임 의견 검토결과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주무관

이시은

필수의료총괄과 전결 2026. 6. 26.

장

이영재

협조자

시행 필수의료총괄과-2033

(2026. 6. 26.)

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

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665

팩스번호 044-202-3982

/ gold94@korea.kr

/ 비공개(5)